

서천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사업주임 채용공고

서천군장애인체육회를 선도하여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어 나갈 유능한 사업주임을 다음과 같이 채용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15일

서천군장애인체육회장

1. 채용분야 및 선발인원

채용직위	채용인원	담당업무	비고 (채용시기)
사업주임(9급)	1명	- 장애인체육 사업계획 수립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업무 및 실적관리 - 기금, 도비, 군비, 생활체육지원 사업 - 종목별, 유형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 - 사업 용품 및 비품 관리 - 가맹단체 회원 관리 및 지원 - 홈페이지 관리	(1월중)

※ 채용 후 3개월간 수습 기간 적용,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에 대한 평가를 거쳐 정규직 채용 여부 결정

2. 응시자격 및 요건

가. 공통자격

- 공고일 기준 만 18세 이상인 자(만 60세 이상 응시제한)
- 성별 제한없음(단,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자)
- 공고일 현재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 충청남도에 갖고 있는 자
(서천군 거주자 우선채용)
- 건강상 결격사유가 없고 채용 즉시 정상근무 가능한 자
- 한글, 엑셀 등 컴퓨터 자격증 소지자
- SNS 및 홈페이지 홍보 가능자
- 운전면허 소지자

나. 응시요건

-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동등한 학력 소지자
-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재직한 자 또는 재직자
- 정부투자 및 출연기관 또는 법인·단체(장애인, 체육 등)에서 이에 상응하는 직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 ① 정부투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에서 공무원 9급직 이상 수준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 ② 체육회, 장애인체육회, 생활체육회에서 공무원 9급직 이상 수준의 직위에 재직 중이거나 재직한 자

다. 응시자격 결격사유

- 서천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17조(자격제한) 및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3. 보수 및 근무조건

- 채용기간: 2026. 2. 1. ~(수습기간 3개월 적용)
- 근무시간: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함(※주5일 근무)
- 보 수: 2026년도 장애인체육회 예산에 의한 기준에 따라 결정
 - 기본급: 2,039,500원(※4대보험료, 퇴직충당금 별도)
 - 수 당: 직책보조비, 급식비, 명절휴가비,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4. 전형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형식요건 심사)
 -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전공, 경력, 자격 등 응시 자격요건의 적격 여부를 제출서류에 의해 심사
- 2차 시험 : 면접시험(1차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 기본 역량 검증)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성(컴퓨터활용능력), 리더십, 발전가능성, 능력 및 적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검정

5. 채용시험일정

공고기간	접수기간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비 고
2026.1.15.(목) ~ 1.24.(토)	2026.1.26.(월) ~ 1.27.(화)	2026. 1. 28.(수)	2026. 1. 29.(목) (개별 통보)	2026 1. 29.(목) (개별 통보)	

- ※ 공고방법: 서천군 홈페이지 공고(10일간)
- ※ 면접시험 장소와 시간은 개별 통지
- ※ 본 채용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음
- ※ 합격자 발표: 개별통보

6. 응시원서 제출

- 제출기간: 2026. 1. 26.(월) ~ 1. 27.(화)
- 제 출 처: 서천군장애인체육회 ☎ 041-953-1315
 - 서천군 마서면 마서로 401 (서천군생활체육센터1층)
- 제출방법: 접수기간 내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준비하여 접수처에 직접 제출
 - ※ 접수는 평일 근무시간(09:00 ~ 18:00)내에 한하며, 인터넷 및 우편제출은 받지 않음

7.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1호서식]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별지2호~3호 서식]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4호서식]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5호서식]
- 주민등록등·초본 1통(남자의 경우 병역사항 포함)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학위증명서) 1부
- 자격증 사본 1부(원본은 2차 면접시험시 지참)
-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1부(원본은 2차 면접시험시 지참)
 - 서류전형 시 제출된 경력증명서(근무기간, 담당업무 및 경력확인, 연락처) 당해 분야 인정 근무여부 판단이 모호할 경우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본인이 경력증명서 발급 부서에서 당해 분야임을 직접 확인받아 제출하여야 함.
(※첨부서류가 미제출된 경우에는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은 인정하지 않음)

8. 응시자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합니다.
- 서천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7조(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응시할 수 없으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상의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자격미비자의 응시,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최종 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각종 증명서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추후 응시제한 및 결격대상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그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 원본이 첨부되지 않은 이력서 상의 경력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본 시험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 게시 또는 개별통보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천군장애인체육회(☎ 041-953-131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결 격 사 유

○ 서천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규정 제17조(자격제한)에 의한 사항

「서천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 운영 규정」 제17조(자격제한)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 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면직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인사채용과 관련하여 비위를 행한 자는 발견 즉시 합격이 취소되고, 향후 5년간 응시가 제한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스톱킹범죄
-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